

2010. 11. 8(월) 10:00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 【 목 차 】

1.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1
2.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 4
3. 거창군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4.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5.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7.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8. 거창군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조례안 ----- 24
9.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31
1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1호

### 2 제정이유

-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 조례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 및 평가,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가능발전의 실현 등 군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거창군과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나.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다.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9조 부터 제23조까지).
-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강화 등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녹색성장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살기 좋은 녹색생활 영위를 위해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내지 안 제6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토록 하였음.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내지 안 제22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녹색성장 관련 시책 및 대책수립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 위의 내용과 같이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 거창군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2호

## 2. 제정이유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와 등록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등록을 위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독거노인 공동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공동생활을 하려는 독거노인이 5명 이상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다. 등록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군수는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나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 경비 또는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 하되,
-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하고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하며,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함

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사유에 관하여 규정함

- 군수가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

만이 되었거나 (이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공생활을 포기할  
때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  
시설을 운영한 때로 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생활기반을  
마련하고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생활을 하려는 독거노인이 5명이상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원범위는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과금과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경비의 일부와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연간 14,300천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기존의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 난방비 등의 명목으  
로 연간 1,400천원정도 지원되고 반면에 공동거주시설에 대하  
여는 14,300천원정도 지원 계획으로서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3호

## 2. 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4세대(世代) 이상 가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금전보상 차원의 부양등에 필요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부모에 대한 부양환경 조성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함
- 다. 효도수당의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라. 효도수당의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지급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지급함
- 군수가 효도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관리를 위하여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토록 함

마. 효도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효도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군수는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하며,
- 지급중지 사유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면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호 사상을 양양하고 경로효친 사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관내의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가정으로서 월 1십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하며 효도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기 지급된 효도수당의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효도수당 지급시책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이 처해 있는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효친 사상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4호

## 2. 개정이유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대상과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장학생의 신청·추천·선발 등 추진절차, 장학금의 지급금액 및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하고,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변경함(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

- 중·고등학생 ⇒ 고등학생·대학생

나.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종전 중·고등학생에게 공통 적용하던 학습성취도 기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현행: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중·고등학생 공통 적용)

○ 개정

- 고등학생: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

- 대 학 생: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 새마을장학생의 신청과 추천, 선발 등 추진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안 제5조 삭제).

라.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지급금액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규정함(안 제7조).

○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

마. 우등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로서 중·고등학생에게 공통 적용하던 학습성취도 하락비율 기준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현행: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이하로 떨어진 경우

○ 개정

- 고등학생: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

- 대 학 생: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를 순화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

운영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장학생의 신청·추천·선발 등 추진절차에 관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중·고등학생 → 고등학생, 대학생)
-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 장학금 지급금액을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 우등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다만,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금」의 지원대상, 지급금액 등을 상호 감안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5호

## 2. 개정이유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개정되어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20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 용어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외국인”으로 한정된 조례의 지원대상을 “외국인주민”으로 조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추가하며,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 사항신설과 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에 심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20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 용어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

18조까지).

○ 제명 변경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불일치 사항 조정

-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

-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불법체류자 제외 유지)

나.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도록 함

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5호 신설).

○ 종전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이나 생활·취업 등 상담,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외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추가함

라.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2장의 제목,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위원회의 명칭 변경

-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 강화

-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에 관한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에 심의권 부여

○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 위촉위원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이내로 확대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명을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범위도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로 확대 하는 등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의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6호

## 2. 개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2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안 별표 3 신설).

- 다. 현행 다음 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6항후단).
- 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직기간 미산입, 연가 미가산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사유에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포함하여 공제토록 함(안 제18조, 제20조제1항).
- 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과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참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원격지 간 전보발령 부임’ 사유는 삭제함(안 제22조).
- 바. 별표 3으로 규정한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별표 4로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함(안 제23조제1항, 안 별표 4).
-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 따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은 정비하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한 경조사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 삭제).
- 아.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등).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의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일반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 공가 등 복무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7호

## 2.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09.5.22)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09.10.30)됨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 등 법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제명, 안 제2조).
-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 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 7조)
- 위원회 명칭변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정보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변경: 군수 ⇒ 부군수
  - 당연직위원 명시: 업무관련 실·과장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 라.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정보화책임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함
- 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으로서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원칙과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09. 8. 23)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화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민간 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군의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는 지난 1999. 1. 15일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그 밖에 조례형식이나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8호

## 2.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1995.4.10일 설립·개원한 거창문화원의 육성·발전과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 및 거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 다.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둠(안 제6, 제9조).

- 군수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며,
-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지원 외에도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내용과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각종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하고,
- 운영보조금은 상근직원의 인건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거창 문화원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유의 문화를 계발, 보존 및 발전시키고 거창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와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용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화원의 발전과 우리군의 고유문화의 보존, 발전 등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49호

## 2. 개정이유

-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하여 전입 인원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부모의 육아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개별 지원신청서를 통합하여 지원 창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
- 조례 제정 당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한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전입 인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제3조)

- 현행: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 개정: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세대

나. 임신·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부모에 대한 육아경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 시책의 내용과 자격, 지원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5호, 제8조제2항 신설).

-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접종일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는 자로 하고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현행: 부모(보호자 포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
- 개정: 부모(보호자 포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

라.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각 부서별 개별 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지원과 전입장려지원으로 구분한 통합 지원신청서로 신설·규정

함으로써 지원 창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삭제, 안 별지 서식 신설).

- 현행: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입장려 등 지원
- 개정: 현행 개별 서식을 삭제하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별지서식)로 통합 신설

마. 이 조례의 제정 당시(2007.08.01)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 부칙 제4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안 조례 제1852호 부칙 제4항 삭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세대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 하였으며(안 제3조),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접종을 추가하였으며(안 제5조)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전 고등학생)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조치하였음. 다만, 농어민자녀, 저소득가구, 공무원자녀 등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52호

## 2. 변경이유

### 1) 거창일반산업단지 편입용지 처분

-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군에서 매입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고자 함.

#### <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

- 소재지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대산리 일원
- 사업규모 : 745,433㎡(거창군 499,330㎡)
- 사업비 : 65,563백만원      ○ 준공 : 2012. 12월
- 사업시행자 : 거창산업단지(주) 대표이사 김영현

### 2) 농어촌버스(서흥여객)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교환

-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분리입지로 인해 이용상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어,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반영 이전예정지인 대평리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 완료하고 서흥여객 자동차(주)정류장부지와 상호 교환 하고자함

★ 교환방법 : 필지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 농어촌버스정류장 이전 예정부지 현황**

- 이전예정지 : 거창읍 대평리 1000-1번지의 5필지, 3,851m<sup>2</sup>
- 농어촌버사이전통합 완료 : '11. 05월

### 3. 처분재산의 표시

#### 1) 거창일반산업단지 편입용지 처분

○ 처분재산[거창군 ⇒ 거창산업단지(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남상면 월평리 213-2 번지의 73필지	499,330	2,369,801	2010	거창일반산업 단지 조성	거창군

★ 거창군 선투입 보상금 : 9,659백만원

#### 2) 농어촌버스(서흥여객)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교환

○ 처분재산[거창군 ⇒ 서흥여객자동차(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6필지	3,851	733,984			
1	대	거창읍 대평리 1000-1	1,118	134,160	2010	서흥여객자동차(주) 정류장 이전 부지	거창군
2	전	거창읍 대평리 1007-5	19	4,294			
3	전	거창읍 대평리 1007-8	150	17,550			
4	답	거창읍 대평리 1007-9	512	145,920			
5	전	거창읍 대평리 1010	1,365	322,140			
6	대	거창읍 대평리 1012-4	687	109,920			

○ 취득재산[서흥여객자동차(주) ⇒ 거창군]

◆ 토 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필지	2,522	1,180,296			
1	대	거창읍 김천리 350	2,522	1,180,296	2010	서흥여객자동차(주) 정류장부지와 교환	서흥여객 자동차(주)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용 도	소 재 지	면 적				
계			456.88	108,161			
1	2종근린 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거창읍 김천리 350	456.88	108,161	2010	서흥여객자동차(주) 정류장부지와 교환	서흥여객 자동차(주)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가. 거창일반산업단지 편입용지 처분안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대산리 일원에 추진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거창산업단지(주) (대표자 김영현)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거창군에서 매입한 부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처분(거창군소유 499,330㎡)하려는 것임.

다만, 거창군 소유부지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향후 분양여건, 원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 위 치 : 남상면 월평리, 대산리 일원
- 사업규모 : 745,433㎡(225,493평 정도)
  - 거창군 소유 : 499,330㎡(보상금 9,659백만원)
  - 거창산업단지(주)소유 : 246,103㎡
- 소요사업비 : 65,563백만원
- 사업시행자 : 거창산업단지(주) 대표 : 김영현

나. 농어촌버스(서흥여객) 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교환안은 시외버스와 군내버스(서흥여객)의 터미널이 상호 분리해 입지한 관계로 이용상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 예정지인 거창읍 대평리 자동차정류장 부지(시외버스 터미널 뒤편)를 군에서 매입(3,851㎡)완료하고 서흥여객 자동차(주) 정류장 부지(김천리, 2,522㎡)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

※ 교환방법 : 필지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0. 29
- 마. 의안번호: 제2010 - 51호

## 2. 계획의 필요성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3. 계획의 주요내용

- 1.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의 개요 (p1 ~ p8)
- 2.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비전 및 목표 (p9 ~ p10)
- 3. 지역사회 현황분석 (p11 ~ p50)
- 4.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p51 ~ 78)
- 5. 개별 보건사업 계획 (p79 ~ 182)
- 6. 보건소 현안사업 및 군수공약사업 현황 (p183 ~ p198)
- 7.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p199 ~ p207)
- 8. 관련자료 및 부록 (p209 ~ p231)

##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계획을 수립·제출한 것으로
- 동 계획서의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길잡이 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 동 계획서 수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수립의 개요 및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 계획기간내의 개별 보건사업 계획
  - 보건소 현안사업 및 군수공약사업 현황
  -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및 부록순으로 수립되어 있음.
- 먼저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하여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 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 2010. 10월에 제출함으로서 시기를 일실하였고,
- 동 의료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1) 지역의 건강수준 (p23, p35)분석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물리적·사회 경제학적 특성, 건강수준, 건강에 미치는 요인, 건강형평성 등에 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인구 현황의 경우 청소년, 장년, 노년 등으로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고 이 또한 관련 통계자료를 대부분 2008년도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자원현황이나 의료이용 현황, 환경보건 수준, 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2)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 (p36~p40)조사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주민이 가장 관심있는 건강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비전, 목적,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모임, 좌담회,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조사가 필요하나, 동 계획의 경우에는 2010. 7. 26 ~ 7. 30까지 1회에 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또한 조사항목도 주민의 관심도 조사보다는 보건소 이용만족도, 청소년 흡연문제 등 단순 형식에 거친 조사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음.

3) p53~p73의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점과제 선정은 p32~p33의 10대 사망원인(1순위 신생물, 2순위 뇌질환, 3순위 심장질환)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바람직하며, 또한 계획수립 지침에서도 중점과제의 선정 원칙은 지역주민의 관심 항목으로서 가급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이상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의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추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 계획서 수립시에는 보다 면밀하게 작성·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